

의안번호	2207855
의 퇴 인	박덕흠 의원
회 답 일	2025.04.01.
추 계 번호	25C0354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심리안정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(이하 “CC TV”)을 설치하고, 설치·관리 및 열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 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 9,000만원, 2031년 3억원 등 향후 5 년간 19억 9,000만원(연평균 3억 9,8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심리안정실 내 CCTV 설치 (안 제28조의3제1항)	490	-	-	-	-	490	98
실태조사(안 제9조)	300	300	300	300	300	1,500	300
합 계	790	300	300	300	300	1,990	398

주: 1. CCTV 교체주기를 6년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내용연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 라질 수 있음

2.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 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의2 (심리안정실 설치·운영)	특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 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교 내 별도의 공간(이하 “심리안정실”이라 한 다)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28조의3 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 치 등)	(제1항) 특수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자는 특수교육대 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심리안정실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 레비전(이하 “폐쇄회로 텔레비전”이라 한다)을 설치 ·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특수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 한 경우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28조의3 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	2. 특수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특수교육교원과 직원(이하 “특수교육교직원”이라 한다) 전원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	의무규정
		(제4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재량규정
3	안 제28조의4(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)	(제3항) 특수학교를 설립·운영하는 자는 제28조의3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		(제4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리안정실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·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·점검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8조의2 (심리안정실 설치·운영)	×	(제1항) 개정안은 특수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학교 내에 심리안정실을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함 · 심리안정실이 설치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대통령령에 위임된 심리안정실의 설치기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가 곤란함 · 참고로, 2025년 2월 기준 전국 특수학교는 196개교이며 그 중 163개교에 심리안정실이 설치된 상태임
2	안 제28조의3 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	○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3	안 제28조의4(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)	-	(제3항) 개정안은 특수학교의 설립·운영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· 동 조항은 이미 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음 · 특수학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를 근거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폐쇄회로 텔레비전, CCTV)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2025년 2월 기준 총 6,692대가 설치된 상태임 ·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6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주체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특수학교의 설립·운영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음
		○	(제4항)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, 본 추계서에서는 심리안정실 내 CCTV 설치(안 제28조의3제1항) 및 실태조사 실시(안 제28조의4제4항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
- (안 제28조의3제1항) 심리안정실마다 한 개의 CCTV가 설치되며, 설치비용 전액이 지원된다고 가정
 - 심리안정실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특수학교당 하나의 심리안정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국·공립, 사립 특수학교 모두 설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, 추계기간 동안 특수학교의 수는 202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각 특수학교가 기존에 CCTV를 운용 중임을 고려하여 주변기기 비용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- (안 제28조의4제4항)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교육부의 특수교육 실태조사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
 - 현행 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3조¹⁾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·배치,

교원 수급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준용함

-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

-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심리안정실 내 CCTV 설치(안 제28조의3제1항)

-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CCTV 설치 대수와 CCTV 설치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, 심리안정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4억 9,000만원으로 추계
 - (CCTV 설치 대수) 특수학교당 하나의 심리안정실이 설치되고, 심리안정실마다 한 개의 CCTV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, 특수학교의 수를 적용함
 - 추계기간 동안 특수학교의 수는 202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참고로, 2025년 2월 기준 전국 특수학교의 수는 196개교이며 유형별로 국립 6개교, 공립 100개교, 사립 90개교임
 - (CCTV 설치단가) 교육부의 국립학교 대상 CCTV 설치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CCTV 설치단가는 250만원으로 함
 - 교육부는 국립학교 안전강화를 위하여 CCTV 설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설치단가를 25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음
 - (교체주기)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²⁾에 따라 조달청장은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, 그에 따르면 보안용카메라의 내용연수는 6년이므로 추계기간 동안 CCTV의 교체는 없는 것으로 가정

1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3조(특수교육 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·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2) 「물품관리법」 제16조의2(물품의 내용연수)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(耐用年數)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CCTV는 2027년에 각 학교에 설치되며 추계기간 동안 교체되지 않음을 가정

[표 2] 심리안정실 내 CCTV 설치비용 추계

(단위: 대,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
CCTV 설치 대수 (A)	196	—	—	—	—	—
CCTV 설치단가 (B)	2.5	—	—	—	—	—
추가재정소요 (AxB)	490	—	—	—	—	98

주: CCTV 교체주기를 6년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내용연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실태조사(안 제28조의4제4항)

-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교육부의 각종 실태조사 비용을 준용해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5억 원으로 추계

[표 3] 2025년 실태조사 비용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세부사항	예산
장애학생 교육지원(1231-300)	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연수 컨설팅	300
특수교육 내실화 지원(1234-300)	특수교육 실태조사	300

자료: 교육부

[표 4] 실태조사 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9조)	300	300	300	300	300	1,500	300

주: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